

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

회 차 : 제 647회 예비심사

안전번호 : 제 2018-464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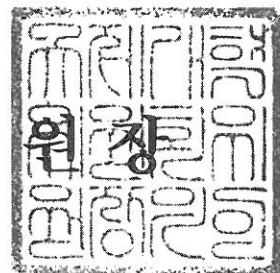
안 건 명 :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

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·의결 하였음.

붙 임 :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사
결과

2018. 10. 05.

규 제 개 혁 위 원 회 위



<붙임>

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」
규제심사 결과

규제 내용	심사 결과
<p>1. 주택관리업자 참가자격 제한 강화(강화)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임, 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</p>	< 비중요 규제 >
<p>2. 적격심사 평가위원 제외사유 신설(신설) 관리사무소장의 소속 업체가 해당단지에 입찰할 경우 평가위원 구성에서 제외</p>	< 비중요 규제 >
<p>3. 입찰공고 방법 추가(신설) 입찰공고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 홈페이지에도 공고</p>	< 비중요 규제 >
<p>4. 적격심사평가표 보관과 공개의무화(강화) 적격심사제 운영시 회의록(평가표 포함)을 작성하여 보관</p>	< 비중요 규제 >